

일본의 전자공증제도에 관한 소고(小考)

박종순
변호사

I. 서론

이 글은 2000년 일본에서 도입된 전자공증제도에 관한 글이다. 일본은 2000년 4월 공증인법 일부를 개정하여 공증인제도에 기초를 둔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시 일본이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한 배경으로는 컴퓨터·네트워크화를 중심으로 하는 통신수단의 변혁에 따라 일본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세계적 규모의 정보 교신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과 전자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각종 신청 절차를 전자화하는 이른바 전자정부의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자신청 절차의 실현을 위한 검토가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든다.¹⁾ 또한 1999년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에서 결정된 고도정보통신사회를 향한 기본방침과 각계에서 전자공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된 것도 도입 배경 중 하나이다.²⁾

그런데 전자거래·전자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가 송수신되기 때문에 정보의

1) 原 司(하라 츠카사), 公證制度に基礎をおく電子公證制度の導入, NBL, No. 690(2000. 6. 1.), 商事法務研究會, 12면.; 木村哲也, 電子公證制度の現狀と問題點, 關西大學 法學研究所 第45回 総合研究會の報告, 2005, 91면.

2) 이상영, 공증제도의 과제-전자공증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8권 제2호(통권 15호), 623면.

작성자를 확인하고 정보 내용의 개찬(改竄, 글의 뜻을 달리하기 위하여 일부 글자나 구절을 일부러 고치는 것을 말한다.), 소실 등을 방지하거나 개찬, 소실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³⁾

여기에서 전자공증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전자서명이나 전자인증은 주로 정보의 작성자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전자공증제도는 정보 내용의 개찬이나 소실에 대비하여 정보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전자서명이나 전자인증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전자정보를 작성한 자를 확인할 수 없고, 전송 도중에 정보의 소실 등에도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제삼의 기관에서 작성된 정보에 관한 기록(작성자에 대한 정보, 작성된 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정보)을 작성·보관하게 하고, 이에 따라 훗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정보 작성자 및 정보의 존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쟁 해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전자공증제도이다.⁴⁾

일본의 전자공증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이 제도는 상업등기제도에 근거하여 전자인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었다.⁵⁾ 또 전자공증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무성령(法務省令)의 공포가 필요하였다. 마침내 2001년 3월 31일 법무성령이 공포되어 전자공증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공증인연합회는 2002년 1월 15일 확정일부의 부여 및 사서증서의 인증 업무를 개시하였고, 같은 해 4월 1일부터 전자정관의 작성에 대한 인증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또한 2004년 3월 1일부터 법인이 아닌 개인도 전자공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⁶⁾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에 이르러 정보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상거래에서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하자 전자문서를 통한 공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 상업등기의 전자신청제도가 도입되면서 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전자정관 등 전자문서에 대한 공증의 필요성도 제기되자, 정부는 2009년 공증인법 일부를 개정하여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고,⁷⁾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⁸⁾

3) 原, 앞의 논문, 12면.

4) 原, 앞의 논문, 12면~13면.

5) 이정현, 일본의 전자공증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13. 10., 10면.

6) 이우석·전정기, 전자거래에서 거래의 안전성 확보 제도 -일본의 전자공증제도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2005. 10., 96면.; 이정현, 앞의 논문, 5면.; 木村, 앞의 논문, 91면.

그러나 2010년부터 3년간 전자공증을 이용한 사례는 654건으로서, 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전자공증이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현재에도 전자공증제도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⁹⁾

이제 우리나라의 전자공증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이유를 한번 되짚을 때다.¹⁰⁾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글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전자공증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본의 전자공증제도에 대한 현황들은 우리에게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일본 공증인법을 포함하여 공증제도에 관한 약간의 연혁을 보고, 이어 일본의 전자공증제도의 내용과 장점, 이 제도의 운영체제와 제도 도입 후의 현상과 평가를 살펴본 다음 일본의 전자공증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요약하고,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자공증제도가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참고로 현재 일본공증인연합회가 활용하고 있는 전자정보기술, 특히 전자판유언등록(電子版遺言登録)시스템 등 몇 가지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
- 7)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증사무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전자공증 등 선진적인 공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전자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공증의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상업등기법의 제정으로 회사 등기의 신청을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기서류에 첨부하는 정관을 전자적으로 공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전자공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전병서, 전자공증제도에 관하여, 대한공증협회지, 통권 2호, 2009, 27면.
 - 8) 장재형, 최근 공증 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한 분석과 검토, 인권과 정의, Vol. 390, 2009. 2., 186면.; 한명관, 전자공증시대 개막, MK뉴스, 2010. 8. 1.
 - 9) 전병서, 화상공증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법조, Vol. 719, 2016. 10., p. 78면.; 전병서, 전자공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민사소송, 제17권 제2호, 2013, 570면, 574면.
 - 10) 전자적으로 공증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촉탁인이 공증인을 직접 대면하여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하여 전자공증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건수를 보면, 2014년 136건(이용률 0.012%), 2015년 151건(이용률 0.014%), 2016년 365건(이용률 0.033%), 2017년(1~11.) 160건(이용률 0.034%)이다. 2017. 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4면.

II. 본 론

1. 일본 공증인법의 연혁과 공증제도의 역할

가. 일본 공증인법의 연혁

일본 공증인법은 1908년(明治 41년)에 제정되어 1909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공증인법은 프로이센법의 영향을 받았다. 이 법 제정 이전인 1886년에는 공증인규칙과 공증인규칙시행조례가 각 제정되었는데 이 규칙 등은 프랑스 공증인법의 영향을 받았다. 이 규칙 등의 특징은 공증인의 지위를 변호사제도로부터 독립시켰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1887년 최초로 공증인등용시험이 실시되었고, 1889년 공증인 112명이 임명되었다.¹¹⁾

공증제도의 기원은 11~12세기경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에서 계약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직업집단의 발생에서 찾는다. 그 후 이 제도는 프랑스, 스페인 등으로 널리 확대되었다. 예컨대 17세기의 작품인 돈키호테에서는 돈키호테가 유언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공증인이 등장한다. 또 16세기 작품인 베니스의 상인에서는 살 1파운드를 요구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살 1파운드의 담보’ 계약이 공정증서로 작성된 것으로 나온다. 이처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의 공증인(Notary)은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는데, 이를 라틴계 공증제도라고 말한다.¹²⁾

이에 대하여 영미계 공증인(Notary Public)의 특징은 전적으로 서명 인증 등 사실행위를 직무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¹³⁾ 영국의 경우 사무변호사(Solicitor)가 공증업무를 담당하는데 라틴계 공증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등 직무권한이 한정되어 있다. 영국의 제도는 식민지였던 캐나다, 오스트

11) 宗宮英俊, 公證實務をめぐる2,3の問題について, 法政理論, 第46卷 第3号, 2014, 160면.

12) 宗宮, 앞의 논문, 160면~161면.; 근대 공증인제도는 11세기 말경 이탈리아에서 법원의 등록담당직원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성립하였고, 그것이 유럽 대륙의 국가에 전파되어 그 식민지였던 중남미 여러 국가로 확대되었다. 土屋眞一(츠치야 신이치), 主要国の公證人制度と公證人の國際協力, 自由と正義, Vol. 52 No. 7, 2001. 7., 59면.

13) 宗宮, 앞의 논문, 160면.

레일리아 등으로 확대되었다.¹⁴⁾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미국의 경우 공증인제도가 영국으로부터 건너왔지만 완전히 변질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공증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또 문서 서명의 인증 등 사실적 행위만을 하고,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미국의 루이지애나(Louisiana) 주에서는 역사적 이유로 대륙법계의 공증인제도를 취하고 있다.¹⁵⁾

현재 일본의 공증인은 법무대신에 의해 임명되는 실질적 의미의 공무원이고, 법률 행위 기타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있어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나 정관의 인증, 확정일부(確定日付)의 부여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¹⁶⁾

나. 일본 공증제도의 역할

과거 일본에서는 예방법학이라는 것이 경시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그 해결에 필요한 에너지는 크고, 그 비용은 사회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경제 발전에 큰 부담이 되어 국가경제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분쟁의 해결을 담당하는 법원에게도 큰 부담을 준다. 법원의 분쟁처리능력에 한계가 있는 이상, 예방사법의 중요성은 결코 무시될 수 없다.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처리해야 할 사건을 적정 규모로 조절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공증인의 예방사법기능은 중시되어야 한다.¹⁷⁾ 일본의 공증제도는 계약의 성립 및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또한 계약 등의 성립 시기를 명료하게 하여 훗날 분쟁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많은 국민들이 공증제도를 이용하고 있다.¹⁸⁾ 이는 공증제도의 예방사법기능을 반영한 것이다.

2. 일본의 전자공증제도의 개요

14) 土屋, 앞의 논문, 59면.

15) 土屋, 앞의 논문, 59면.

16) 宗宮, 앞의 논문, 160면.

17) 石川 明(이시카와 아키라), 公證制度の改革に向けて, 判例タイムズ, No. 1058, 2001. 7. 1., 62면.; 공증인의 직무를 확대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대응책 중 하나이다. 石川 明(이시카와 아키라), 公證人の職域の擴大, 判例タイムズ, No. 1089, 2002. 7. 15., 69면.

18) <http://www.moj.go.jp/MINJI/DENSHIKOSHO/denshikoshol-1.html>. 公證制度.

가. 서 설

전자공증제도라 함은 지정공증인¹⁹⁾이 전자적 기록(전자문서)에 대하여 전자적 기록의 인증, 일부정보(日付情報)의 부여를 하는 것을 말한다.²⁰⁾

오늘날 일본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 종이에 쓰인 문서뿐 아니라 문서를 컴퓨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피디에프(PDF) 파일과 같은 전자데이터(전자문서)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고, 전자공증제도는 바로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예컨대 공증인은 종이에 쓰인 문서뿐 아니라 전자데이터에 관하여도 작성자를 증명하는 인증이나 그 문서데이터가 있는 시점에서 현재 한 것임을 증명하는 확정일부의 부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증을 한 이러한 전자문서는 20년간 보존된다. 일본에서 전자공증은 법무성이 운영하는 ‘등기·공탁온라인신청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촉탁인과 지정공증인이 주고받는 전자정보는 에스에스엘(SSL, Secure Socket Layer, 웹 서버와 브라우저 간에 암호화된 링크를 설정하기 위한 표준 보안 기술을 말한다.)에 의해 암호화되고 있어 제삼자에 의한 개찬(改竄)이나 훔쳐보는 것을 방지하고, 안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²¹⁾ 다만 금전대차, 토지·건물의 임대차 등 계약이나 유언서 등의 공정증서에 관하여는 전자공증이 인정되지 않는다.²²⁾

아울러 지정공증인은 전자사서증서나 전자확정일부 부여 문서의 해시값을 보관하

19) 법무대신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증인이 전자공증 사무를 한다. 2018년 현재 일본에는 공증사무소가 약 300개이고, 공증인은 약 500명이다. 또 일본에는 동경법무국과 요코하마지방법무국 등에 490여명의 지정공증인이 있다. <http://www.moj.go.jp/MINJI/DENSHIKOSHO/denshikoshol-1.html>. 公證制度.; 일본공증인연합회(日本公証人連合會), 공증제도 한국어판.

20) 公證制度の電子化適用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検討報告書, タイムビジネス協議會, 2013, 22면.; 일본 법령상 전자공증이라 함은 사인 간의 전자적 기록에 인증을 함으로써 ‘누가, 언제, 무엇을, 누구와’ 전자적으로 주고받았는가를 증명함으로써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이로 인하여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우석·전정기, 앞의 논문, 98면.; 우리 공증인법 상 전자공증제도라 함은 지정공증인이 한글·엠에스(MS)워드·피디에프(PDF)파일 등 전자문서 및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병서, 화상공증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79면.; 전자공증은 전자문서의 작성자에 대한 확인이나 전자문서의 전송 및 보존 중의 소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기작성된 전자문서의 작성자나 동일성에 관한 내용을 작성·보관하여 전자문서의 작성자 및 전자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유창호, 전자공증제도에 관한 연구-전자문서의 공증 방안을 중심으로-, 법조, Vol. 568, 2004, 148면~149면.

21) 일본공증인연합회(<http://www.koshonin.gr.jp/business/>), 공증사무(7-5 전자공증).

22) 公證制度の電子化適用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検討報告書, 22면.

므로 나중에 전자문서의 진정성을 지정공증인에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²³⁾

나. 전자공증의 메커니즘(mechanism)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은 공개열쇠암호방식[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공개열쇠암호 인프라)]을 이용한 것이다. 공개열쇠암호방식을 이용한 전자서명에서는 본인밖에 알지 못하는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을 확인한다. 공개열쇠암호방식이 이용된 비밀정보는 최첨단의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해도 해독이 불가능하다. 또 공개열쇠암호방식은, 비밀정보(이것을 비밀열쇠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송부하는 문장을 암호화하고 수신자가 대응하는 별개의 비밀정보(이것을 공개열쇠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복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네트워크상에서 누설되는 정보는 암호문에 머무르기 때문에 비밀정보자체가 누설되지 않는다. 더욱이 공개열쇠암호방식에서는 암호화하는 비밀정보는 본인만 갖고 있기 때문에[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은 복원할 비밀정보(공개열쇠)뿐이다.] 정보송신자를 특정할 수 있다.²⁴⁾

전자공증제도로 돌아와 보건대, 비닉성(秘匿性)이 높고, 법적 효력을 갖는 전자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주고받기를 하기 위해서는 송신을 한 상대방을 확인함과 동시에 송신 경로에서의 훔쳐보거나 개찬 등으로부터 보호할 기술이 필요하다. 전자공증제도에서는 송신을 한 상대방을 확인하고 송신경로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열쇠암호방식에 의한 전자서명이나 암호화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공개열쇠암호방식에서는 비밀열쇠와 공개열쇠라는 2개의 열쇠를 이용한다. 2개의 열쇠는 어느 한쪽의 열쇠로서 암호화한 정보가 다른 한쪽의 열쇠밖에 복원할 수 없다는 관계에 있다. 비밀열쇠는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관리하지만 공개열쇠는 소유자의 정보와 함께 인증국에 등록하고 전자증명서의 형식으로 공개한다. 요컨대 전자공

23) 宮崎 豊 · 石井晶一 · 高橋昌行 · 押田管作, 法務省の電子認證 · 公證システム, 日立評論, Vol. 83, No. 12, 2001, 16면.

24) 酒井秀夫(사카이 히데오), 電子署名及び認證業務に關する法律について, JURIST, No. 1183, 2000. 8. 1-15., 有斐閣, 35면~36면.; 안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그 핵심을 이루는 기술이 통신의 암호화와 복호화를 하는 암호기술이다. 辛島 睦(카라시마 아츠시), 電子署名法概説, 自由と正義, Vol. 52 No. 5, 2001. 5., 14면~15면.

증제도에서는 촉탁인과 지정공증인이 서로 비밀열쇠와 전자증명서를 소유하고 송신자의 전자서명을 검증하는 것에 의해 상대방을 확인한다. 또한 상대방의 공개열쇠를 이용하여 송신정보를 암호화하기 때문에 송신을 하는 상대방 이외의 자가 내용을 훔쳐볼 수 없다.²⁵⁾

3. 전자공증의 내용

가. 내 용

전자공증제도는 현재 공증인이 사서증서(私署證書)에 관하여 하고 있는 인증이나 확정일부(確定日付)의 부여의 사무에 대응하여 전자적 기록(전자문서)에 관하여도 전자공증사무를 하는 공증인인 지정공증인이 전자적 기록의 인증, 일부정보(日付情報)의 부여를 하는 것을 말한다.²⁶⁾ 전자공증에는 전자사서증서(전자적 기록)의 인증, 전자 확정일부의 부여, 인증을 받은 정보·일부(日付) 정보가 부여된 정보의 보존·내용의 증명이 있다.

(1) 전자적 기록의 인증

전자적 기록의 인증은 사서증서의 인증제도를 전자화한 것으로서, 촉탁인(당사자)이 법무대신의 지정을 받은 공증인(지정공증인)의 면전에서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한 것을 자인한 경우에 전자적 기록의 인증을 받는다. 이 제도는 문서에 관한 인증과 같은 사무를 전자적 기록에 관하여도 인정하고, 지정공증인의 인증에 의해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에 붙여진 전자서명이 진정하

25) 宮崎 豊 · 石井晶一 · 高橋昌行 · 押田 晉作, 앞의 논문, 17~18면.; 전자확정일부 부여의 흐름도를 보면, 지정공증인은 공개열쇠와 비밀열쇠를 전용소프트로 생성하고(비밀열쇠는 IC카드 등으로 보존), 신청용 플로피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법무국에 제출한다(공개열쇠의 제시와 전자증명서의 발행 청구). 법무국은 전자증명서를 발행하고, 지정공증인은 발행된 전자증명서를 공증사무소에 비치된 단말기에 보관한다. 이후 이 증명서를 이용한다. 이용자는 전자문서에 자기의 전자서명·전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터넷을 경유하여 지정공증인에게 송부한다. 이호룡, 일본의 전자공증관련 법제동향, 인터넷 법률, 제6호, 2001. 5., 206면.

26) <http://www.moj.go.jp/MINJI/DENSHIKOSHO/denshikosh01-1.html>. 公證制度.

다는 사실(전자서명이 작성자의 의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을 증명한다.²⁷⁾

먼저, 지정공증인이 전자적 기록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은 법무성령이 정한 것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공증인의 면전에서 촉탁과 관련한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 ① 촉탁에 관련한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에 붙여진 전자서명을 한 때(공증인법 제62조의6 제1항 제1호), ② 전자서명을 한 것을 자인한 때(제1항 제2호)에는 그 취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를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에 전자적 방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해 붙여야 한다. 또 인증을 수여하는 대상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전자적 기록 이외의 것에 한정한다(공증인법 제1조 제4호 단서).²⁸⁾

다음으로, 전자적 기록의 인증에 관하여도 사서증서와 같이 이른바 선서인증이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지정공증인이 전자적 기록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지정공증인의 면전에서 촉탁과 관련한 전자적 기록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선서한 다음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한 것을 자인한 때에는 그 취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를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에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붙여야 한다(제62조의6 제2항). 또 촉탁자 본인이 선서를 행할 것을 필요로 하므로 대리 촉탁을 배제하는 제58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²⁹⁾ 아울러 전자적 기록의 인증 촉탁은 법무성령이 정한 것에 따라 해야 한다(제62조의6 제3항). 마지막으로 전자적 기록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 제26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³⁰⁾

전자적 기록의 인증으로는, 예컨대 전자문서의 형태(전자파일)로 되어 있는 회사 정관이나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³¹⁾

(2) 전자확정일부(電子確定日付)의 부여

27) 原, 앞의 논문, 13면.

28) 原, 앞의 논문, 14면.

29) 原, 앞의 논문, 14면.

30) 原, 앞의 논문, 14면.

31) 公證制度の電子化適用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検討報告書, 22면.

이는 확정일부의 부여 제도를 전자화한 것이다. 이 제도는 지정공증인이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에 일부(日付)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日付情報)를 붙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것이 붙여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확정일부가 있는 증서로 간주한다(민법시행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³²⁾). 이에 따라 일부정보가 붙여진 정보는 민법시행법 제4조³³⁾의 완전한 증거력(실질적 증거력)이 인정되어 민사소송법에 있어 일정 시기 이전에 당해 정보가 존재하였다는 취지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이 제도는 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을 전자화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채권양도의 통지·승낙이 전자적 정보의 송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정공증인에 의해 일부정보(日付情報)가 붙여진 정보가 민법 제467조 제2항³⁴⁾의 대항요건으로서 확정일부(確定日付)가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으로 취급된다.³⁵⁾

(3) 인증을 받은 정보·일부(日付) 정보가 부여된 정보의 보존·내용의 증명

인증을 받거나 일부정보(日付情報)가 붙여진 정보를 보존하고,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사서증서의 인증 및 확정일부의 부여에 관하여는, 인증이나 부여의 대상이 된 문서의 보존 및 보존된 내용의 증명(등본의 교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서증서의 인증 및 확정일부의 부여가 전자화된 경우 이는 쉽게 파손된다는 전자적 정보의 성질에 비추어볼 때 훗날 그 내용에 관하여 증명할 수 있게 하고 분쟁을 방지하도록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³⁶⁾

첫째,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를 인증하거나 일부정보(日付情報)를 부여한 시점에서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데 족한 정보를 보존한다(공증인법 제62조의7 제1항, 민법시행법 제7조 제1항). 구체적으로는 부여된 시점에서 전자적 기록의 내용인 정보를 압축하여 얻어진 정보(해시값)가 보존된다. 이것은 인증

32) 민법시행법(民法施行法) 제5조는 확정일부가 있는 증서에 관한 규정이다(平成 二三年 法五三).

33) 민법시행법 제4조는 확정일부의 효과에 대한 규정이다.

34) 민법 제467조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이다. 제467조 제2항은, 전항의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부가 있는 증서에 의해 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35) 原, 앞의 논문, 13면, 15면.

36) 原, 앞의 논문, 13면, 15면.

을 받거나 일부정보가 부여된 정보 전반과 관련하여 청구에 관계없이 보존된다. 이 정보에 관하여는 촉탁인, 그 승계인이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구가 있으면 이들이 보유하는 정보와 인증을 받거나 일부정보가 붙여진 정보의 동일성의 증명(촉탁인 등이 보유하는 정보의 해시값과 보존된 해시값을 비교하는 것에 의해)이 이루어진다(공증인법 제62조의7 제3항 제1호, 민법시행법 제7조 제1항).³⁷⁾

둘째, 인증을 받거나 일부정보가 붙여진 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 보존이 이루어진다(공증인법 제62조의7 제2항, 민법시행법 제7조 제1항). 이 보존은 청구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그 정보에 관하여는 그 후 청구에 의해 이것과 동일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다(공증인법 제62조의7 제3항 제2호, 현행 서면제도에서 등본의 교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서면의 교부에 의한 증명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인증을 받거나 일부정보가 붙여진 정보에 관하여는 보존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인증을 받거나 일부정보가 붙여진 시점에서 그 내용이 해시값이라는 형식으로 항상 보존되기 때문에 인증을 받거나 일부정보가 붙여진 후에 정보의 내용에 변경이 없다는 것과 관련하여 지정공증인에게 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정공증인에 의해 채권양도 등에 관한 정보의 등록·증명이 이루어진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또한 인증을 받거나 일부정보가 붙여진 정보가 훗날 소실되었다고 해도 사전에 정보자체에 대한 보존 청구를 해 두면 언제라도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³⁸⁾

요컨대 보존에 관하여 보면 인증 또는 확정일부의 부여를 촉탁한 전자문서를 20년간 보존한다(전자적 기록의 보존). 또한 인증된 전자문서 또는 확정일부가 부여된 전자문서의 등본을 청구할 수 있다(동일 정보의 제공). 아울러 인증된 전자문서 또는 확정일부가 부여된 전자문서가 진정이라는 것의 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³⁹⁾

나. 절차

37) 原, 앞의 논문, 15면.; <http://www.moj.go.jp/MINJI/DENSHIKOSHO/denshikoshol-1.html>. 公證制度.

38) 原, 앞의 논문, 16면.

39) 公證制度の電子化適用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検討報告書, 22면.

(1) 개 요

촉탁인이 전자적 기록에 전자서명을 하고, 그 전자적 기록에 지정공증인이 인증을 부여하면 전자적 기록에 붙여진 전자서명이 진정(眞正)이라는 것(전자서명이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증명된다.⁴⁰⁾

촉탁인은 전자공증을 받을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전자서명을 한다. 물론 일부(日付)의 부여의 경우는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성이 운영하는 ‘등기·공탁온라인신청시스템’에서 위 전자문서를 첨부파일로 하여 전자공증을 신청한다. 공증인은 공증사무소의 전자공증시스템에 온 전자문서에 전자공증을 하기 때문에 촉탁·청구한 것을 받는다. 인증의 대상이 되는 전자문서는 피디에프(PDF) 형식으로 보존된다. 확정일부의 부여는 텍스트형식·피디에프형식·엑스엠엘(XML) 형식이 사용될 수 있다. 전자문서는 10메가바이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된다. 전자적 기록의 인증의 경우에는 공증인이 문서의 전자서명이 본인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다음 인증한다.⁴¹⁾

(2) 전자공증절차 중 전자적 기록의 인증(정관을 포함하는 사서증서 인증) 촉탁

① 전자적 기록의 인증 촉탁을 하려면 전자증명서를 취득한다. ② 사서증서를 전자파일로 작성한다. 이 전자파일을 전자적 기록이라고 말한다. ③ 전자적 기록의 인증 촉탁을 하기 전에 촉탁을 할 공증인에게 전화나 팩스로 연락을 한다. 공증인이 촉탁 내용에 관하여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없는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다. ④ ②항에서 작성한 전자적 기록에 전자서명을 붙인다. ⑤ 사전 준비로서, 등기·공탁온라인신청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촉탁인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등 환경설정을 한다. ⑥ 등기·공탁온라인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최초 페이지의 신청자 정보등록에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ID), 패스워드 등을 등록한다. ⑦ 신청용 종합소프트웨어를 움직여서 이미 등록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한다.

40) <http://www.moj.go.jp/MINJI/DENSHIKOSHO/denshikosho1-1.html>. 公證制度.

41) 일본공증인연합회(<http://www.koshonin.gr.jp/business/>), 공증사무(7-5 전자공증).

⑧ 처리상황표시 화면의 신청서작성을 선택하고, 신청양식일람선택 화면의 전자공증에서 전자적 기록의 인증 촉탁을 선택한다. ⑨ 전자적 기록의 인증 촉탁의 입력 화면이 표시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완료를 선택한다. 보존의 확인 화면이 표시되기 때문에 ‘예’를 선택하면 신청서 등의 보존을 행한다. 신청서 등이 보존되면 보존의 완료 화면이 표시되기 때문에 OK를 선택한다. ⑩ 처리상황표시 화면에서 파일첨부를 선택하면 첨부파일 일람이 표시된다. 파일추가를 선택하면 첨부파일의 선택 화면이 표시되기 때문에 자기의 컴퓨터에 보존하고 있는 전자적 기록의 보존 장소를 열고 첨부하고 싶은 전자적 기록을 지정하여 열기를 선택한다. 첨부서류 일람화면의 첨부파일명란에 선택한 서류가 화면에 표시되기 때문에 보존을 선택한다. ⑪ 처리상황표시 화면에서 서명부여를 선택하면 서명대상 신청일람 화면이 표시되기 때문에 대상의 신청서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이씨 카드로 서명 또는 파일로 서명을 선택한다. 그리고 파일 또는 아이씨카드로 서명을 부여한다. ⑫ 처리상황표시 화면에서 신청서 데이터 송신을 선택하면 송신전 신청 일람 화면이 표시되기 때문에 송신하는 절차(전자적 기록의 인증 촉탁)의 송신 대상란을 체크하고, 송신을 선택한다. 송신확인 화면이 표시되고, OK를 선택하면 송신전 신청 일람 화면이 표시되기 때문에 대상의 신청데이터의 상태란이 송신완료인 것을 확인하고 ‘닫는다’를 선택한다. ⑬ 도착통지의 확인 후 공증사무소를 방문한다. 촉탁된 전자적 기록의 내용 등에 관하여 촉탁을 받은 공증인이 면전에서 심사하고, 촉탁인이 전자서명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 ⑭ 심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공증인은 전자적 기록에 전자서명을 붙인다. 전자서명을 하기 전에 수수료⁴²⁾를 납부한다. 공증인이 전자적 기록에 전자서명을 붙이고 전자데이터를 교부하기 때문에 전자매체(플로피 디스크, 유에스비 메모리 등)를 지참하여야 한다.⁴³⁾

42) 전자적 기록의 인증의 경우, 사서증서의 인증은 원칙으로서 11,000엔, 정관의 인증은 50,000엔(인지세 40,000엔은 불요)이고, 일부정보의 부여는 700엔이다. 전자적 기록의 보존은 300엔이고, 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은 700엔, 동일 정보의 제공은 700엔(서면에 의한 교부의 경우에는 1매에 20엔을 가산)이다. 일본공증인연합회, 공증사무.

43) <http://www.moj.go.jp/MINJI/DENSHIKOSHO/denshikosh1-1.html>. 公證制度.; 전자적 기록의 인증·교부는 인터넷을 경유하여 교부할 수 없다. 한편 공증인이 일부정보(日付情報)를 부여한 전자적기록은 인터넷을 경유하여 취득한다.

다. 전자공증제도의 장점

공증인에 의한 정보의 공동관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의 정관을 전자인 증하면 그 전자정관은 전국 공증인 모두가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국 어느 공증 사무소에서든 그 전자정관에 관하여 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이나 동일 정보의 제공(중이 정관의 등본 교부에 해당한다.)을 받을 수 있다.⁴⁴⁾

다음으로 법인·개인을 묻지 않고 누구라도 어느 시점에 있는 특정 정보의 존재의 증명이나 증거보전이 안전·확실·용이하게 될 수 있다. 또 인터넷에서 촉탁·청구가 가능하다. 단 전자적 기록의 인증(사서증서의 인증)의 경우, 인증할 때에 촉탁인 또는 대리인은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야 한다(인증에서는 법에 의해 면전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의 정보의 제공(등본의 제공)을 받을 때에도 공증사무소에 출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관 인증 시 중이 정관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4만 엔의 수입인지가 필요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인증된 전자문서나 확정일부가 부여된 전자문서를 싣 비용(1건에 300엔)으로 20년 간 안전하게 보존하게 할 수 있다.⁴⁵⁾

4. 전자공증의 운영 체제

가. 운영 체제

법무대신은 공증인 중 전자공증에 관한 사무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증인을 지정한다. 따라서 지정공증인이 운영의 주체가 되고, 시스템의 운영 등도 지정공증인이 한다. 법무대신은 공증인을 지정하는 것과 함께 지정공증인을 포함한 공증인 전체를 감독한다. 그런데 전자공증제도에 있어 공증행위는 전자적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또 종래 서명압인(署名押印)을 대신하여 전자서명이 사용되기 때문에 공증시 공증인이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전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법무국장이나 지방법무국장은 전자증명서

44) 仲田 章(나카타 아키라), 公証實務における電子情報技術の活用について, 公証法學, 第45号, 2015, 31면.

45) 公證制度の電子化適用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検討報告書, 22면~23면.

를 발행하여 지정공증인의 권한을 인증하고 있다.⁴⁶⁾

나. 시스템의 정비

전자공증제도는 지정공증인의 공증인사무소와 공증사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센터 사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⁴⁷⁾ 인터넷을 통하여 센터와 이용자와의 사이에 정보를 수수하고, 센터는 엄중한 관리 아래 집중적으로 정보를 보존한다. 센터는 이른바 지정공증인의 공증인사무소의 창구 겸 기록보관창고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개념상 공증인사무소의 일부이다.

또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안전의 확보가 문제로 되지만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는 컴퓨터가 제삼자에 의한 부정확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센터의 컴퓨터와 인터넷과의 사이에 엄중한 방화벽을 설치함은 물론 부정 침입을 상시 감시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만전의 조치가 강구되고 있다.⁴⁸⁾

5. 전자공증제도 도입 후의 현상과 평가

가. 전자공증제도 도입 후의 현상

2005년 현재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전자공증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은 ①정관의 인증, ②전자사서증서의 인증, ③전자확정일부의 부여, ④동일성의 증명·동일 정보의 취득이다. 이 제도가 출발한 당시에는 법인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04년 3월부터는 개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⁴⁹⁾

46) 原, 앞의 논문, 16면.; 전자공증시스템은 공증인연합회가 운영 주체가 되고, 법무대신이 이를 감독한다. 전병서, 앞의 논문, 566면.

47) 일본의 전자공증제도는 전자공증센터라는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이 센터는 NTT(일본 전신전화 주식회사)가 공급하는 VPN(공중회선을 전용회선처럼 이용, 가능한 서비스)을 사용하며, 일본공증인연합회는 위 센터를 소유하고 유지비용을 부담한다. 본 시스템은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공개열쇠암호 인프라)로 구축되어 있다. 일본공증인연합회, 공증제도 한국어판.

48) 原, 앞의 논문, 16면.; 木村, 앞의 논문, 93면.

49) 木村, 앞의 논문, 91면.; 2007년 현재 10만 건 정도가 개인이 이용하였고, 정관인증이 전체 전자공증의 20%를 차지하였다. 안원모, 일본공증인연합회 방문결과보고서, 대한공증협회지, 창간호, 2008, 123면.

한편 종래 공증인이 종이에 작성해온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나 공정증서유언 등 증서의 전자판이라고 말해야 할 전자공정증서에 관하여는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증서의 작성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자적 방법으로는 당사자의 의사 확인이 쉽지 않다.

둘째, 설령 공정증서만으로는 집행증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해도 민사 집행절차에서 이것이 전자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

셋째, 현시점에서 수요가 예견될 수 없다.⁵⁰⁾

나. 전자공증제도에 대한 평가

일본은 정보가 전자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입 이후 지정공증인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 전자공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기통신회선 등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점, 전자적 기록의 내용에 대한 비밀이 유지된다는 점 등을 들어 전자공증이 많이 이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⁵¹⁾ 그러나 2013년까지 실무적으로 대단한 변화가 온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즉 단순히 공증인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다룰 수 있도록 하였을 뿐 공증인이 할 수 있는 인증업무의 범위나 공증인의 대면 요건 등이 변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⁵²⁾

아무튼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전자공증제도의 이용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 이용된 전자공증은 약 81,000건이다.⁵³⁾

50) 木村, 앞의 논문, 92면. 현시점에서 전자화의 장점은 종이로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51) 이우석·전정기, 앞의 논문, 114면.

52) 이정현, 앞의 논문, 16면.

53) 日本公証人連合會 한국어번역 내용.; 통상 정관 공증 시에는 4만 엔의 인지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전자 공증 시 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사용자에게 이득이 있어야 활성화 가능). 안원모, 앞의 보고서, 123면.

6. 일본의 전자공증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가. 우리나라의 전자공증제도와 일본의 전자공증제도와 비교

(1) 지정공증인

법무부장관이 전자공증사무를 취급할 지정공증인을 공증인 중에서 지정하는 것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같다.

(2) 전자공증시스템

우리나라에서는 지정공증인이 법무부장관이 개발하여 보급한 시스템인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을 이용하여야 한다.⁵⁴⁾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일본공증인연합회가 전자공증시스템을 운영하고, 법무대신은 이를 감독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이다.

(3) 전자공증의 종류

우리나라에서는 전자공증제도로서 사서증서 등의 인증에 관하여만 전자공증을 도입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전자공증제도로서 사서증서 등의 인증 외에 확정일자 부여(확정일부의 부여)도 도입하였다. 이 점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이다.⁵⁵⁾ 한편 공정증서에 대한 전자공증제도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모두 도입하지 않았다.

(4) 공증사무소 출석

54) 우리나라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서는 전자공증시스템 Vision, 전자공증 서비스 제공, 전자공증문서 보관 서비스 제공, 지정공증인 관리·감독 서비스 제공, 유관기관연계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안내하고 있다.

55) 그밖에 일본의 전자공증제도에는 인증을 받은 정보·일부정보가 부여된 정보의 보존·내용의 증명이 있고, 우리나라의 전자공증제도에는 지정공증인의 인증한 전자문서 등의 보존, 촉탁인의 전자문서 등의 보관 청구, 인증정보의 제공 등이 있는데 이점에 대하여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같다.

일본은 전자공증제도에서 대면성의 요건을 지키고 있다. 즉 일본의 경우 전자적 기록의 인증 촉탁과 동일 정보의 제공 청구에 대하여는 온라인 신청을 한 다음 공증인사무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일자 부여는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진다.⁵⁶⁾

우리나라는, 2017년 12월 12일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되기 전에는 일본과 같이 대면성의 요건을 지켰다. 즉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촉탁이 이루어지더라도 촉탁인은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야 하고, 지정공증인은 촉탁인을 직접 대면하여 촉탁인의 신원을 직접 확인하였다. 그러나 2017년 12월 12일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2018. 6. 20. 시행)되어 화상공증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촉탁인은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이다.

나. 일본의 전자공증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첫째, 일본의 경우 공증인 거의 대부분이 지정공증인이다(전체 공증인 중 98%를 차지한다.). 따라서 전자공증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기본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2018. 9. 현재 공증인이 337명(임명공증인 78명, 인가공증인 259명)이고, 그 중 지정공증인이 약 90여명이다(전체 공증인 중 약 25%를 차지한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 지정공증인이 10여명 증가하였으나 전체 공증인 대비 비율을 볼 때 일본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전자공증 사무를 취급할 공증인을 더 많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의 경우 전자공증제도에 확정일자 부여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증인과의 대면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정일자 부여야말로 전자공증제도에 가장 충실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공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부여를 전자공증제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⁵⁷⁾

56) 전병서, 전자공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567면~572면.

57)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은, 공증 유형에 확정일자(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셋째, 일본의 경우 전자적 기록의 인증과 동일 정보의 제공 청구를 할 때에는 비록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하더라도 인증과 동일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촉탁인이 공증인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즉 대면성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12월 12일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되기 전에는 전자공증제도에서 대면성을 유지하였다. 그래서 전자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공증을 신청한 뒤 공증인사무소에 출석하여 지정공증인을 대면한 다음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증인법 일부 개정을 통해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 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화상공증의 도입에 따라 촉탁인에게 불편을 주는 대면성의 원칙이 제거됨으로써 앞으로 전자공증제도가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법무부와 대한공증인협회가 전자공증제도는 물론 화상공증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일본의 경우 일본공증인연합회가 전자공증제도의 주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가 전자공증제도의 주체이다.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겠지만 전자공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자공증제도의 운영 주체를 법무부에서 대한공증인협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대한공증인협회가 전자공증제도의 주체가 되면 아무래도 협회는 전자공증을 활성화하여야 할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참고

참고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상공증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화상공증제도라 함은 촉탁인이 공증사무실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분쟁발생에 대비한 확실한 증거자료를 더 편리하게 확보하는 데에 있다.⁵⁸⁾ 즉 개정 전 공증인법에는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번은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화상공증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 공증 촉탁인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58) 2017. 12. 11. 법무부 보도자료,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공증시대가 열린다 -화상공증 제도 도입 등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웹캠(Web-Cam)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화상공증의 대상 범위는 법인의사록·정관 등 사서증서의 인증에 한정되며,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는 화상공증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화상공증 시 대면과정 전체가 녹음·녹화되어 저장되므로 향후 관련 분쟁발생 시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⁵⁹⁾

7. 일본공증인연합회의 시스템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전자정보기술에 대한 소개

가. 전자판유언등록(電子版遺言登錄)시스템

일본에서 2014년에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는 10만 건이 넘는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유언공정증서의 존재를 상속인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망하면 그 유언은 사장(死藏)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1989년(平成元年) 이후에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의 데이터(작성일, 작성공증인 등의 인덱스 데이터)는 모두 일본공증인연합회에 보내져 이체는 어느 공증인사무소든 상속인 등이 유언공정증서의 유무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데이터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공증인연합회의 서버에 온라인으로 보존되어 있고, 상속인 등이 공증인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의 유무에 관한 검색을 의뢰하면, 그 공증인사무소에서는 일본공증인연합회 사무국으로 팩스로 검색을 의뢰하고, 공증인은 그 조회 결과를 상속인에게 전달한다. 2014년 4월 이후에는 모든 유언공정증서의 원본을 전자파일(PDF형식)화하여 이를 송신할 때 엄격하게 암호화한 다음 일본공증인연합회의 서버에 송신하고, 일본공증인연합회에서는 서버에 데이터를 보존함과 동시에 데이터를 원격지의 견고한 장소에 마련한 서버에 백업(backup)하여 보존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화재로 인해 원본 등이 멸실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기능을 부가한 시스템을 ‘전자판유언등록시스템’이라고 말한다.⁶⁰⁾

59) 법무부 보도자료. 한편 화상공증에서는 4중 인증절차를 거치는데 이는 전자서명 또는 휴대폰 인증, 신분증 진위 확인, 촉탁인의 화상대면, 화상면담 녹음·녹화를 말한다.

60) 仲田, 앞의 논문, 31면~32면.

나. 공증업무 지원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 가장 중요한 시점(視點)은 정확성의 확보와 속도이다. 일본공증인연합회에서는 전부터 각종 사안에 대응한 예문집(例文集)을 발간하여 공증인에게 배부하였는데 그 예문을 모두 텍스트파일로 위 전자판유언등록시스템에 전송하였다. 그 결과 공증인은 예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⁶¹⁾

Ⅲ. 결 론

앞에서 일본의 전자공증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이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자공증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국민이 전자공증제도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공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앞으로 전자거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동반하는 전자공증제도를 우리 국민이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문제이다.

둘째, 전자공증을 담당할 공증인을 대폭 지정하여야 한다. 일본에서는 거의 모든 공증인이 지정공증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공증인 중 25%가 지정공증인이다. 전자공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기반으로 지정공증인의 대폭 지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자공증업무가 공증 업무 중 새로운 업무영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셋째, 일본과 같이 전자공증제도의 내용에 확정일자 부여를 포함하여야 한다. 전자공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자공증의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금년부터 화상공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61) 仲田, 앞의 논문, 32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촉탁인에게 더 많은 편리성을 주었다. 앞으로 화상공증제도가 전자공증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제도에 대한 홍보도 절실하다. 특히 전자공증제도와 화상공증제도가 이용자에게 여러 가지 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당장의 일은 아니지만, 전자공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자공증제도의 운영 주체를 법무부에서 대한공증인협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전자공증제도의 현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여 이 글에서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 점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일본의 전자공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욱더 구체적인 전자공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생각이다. 어쨌든 우리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도입한 전자공증제도와 화상공증제도가 입법 목적에 맞게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공증인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이다. 